

평창강 하류권역(본류 구간) 하천기본계획(변경)

# 전략환경영향평가

주민 등의 의견 수렴 반영결과

2021. 3



국 토 교 통 부  
원주지방국토관리청



**(7) 비대면 설명회 실시**

- 비대면 설명회 개최일시 : 2020. 06. 23.(화) ~ 2020. 06. 24.(수) 게재 (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)
- 비대면 설명회 방법 : 설명회 자료, 요약문,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 게시

**(8) 주민의견 제출**

(가) 제출기간

- 공람 시작일로 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

(나) 제출방법

-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서면으로 공람 장소에 제출



지역신문 : 강원도민일보



**평창강 하류권역(분류 구간) 하천기본계획(변경) 및 하천-보양사업(보양사업) 하류권역(분류 구간) 하천기본계획(변경) 전략환경영향평가(변경)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요약**

본 사업은 「하천법」 제10조 제1항에 따라 「하천기본계획(변경)」을 수립하고, 「하천법」 제10조 제2항에 따라 「하천-보양사업(보양사업)」을 시행함에 따라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0조 제1항에 따라 「전략환경영향평가(변경)」를 실시하고,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0조 제2항에 따라 「공람」 및 「주민설명회」를 개최한 결과 요약입니다.

**특수사항(주요결과)**

1. 공람 결과  
 (1) 공람 대상: 본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(변경) 결과에 대해 주민 등에게 공람을 실시함.  
 (2) 공람 방법: 주민설명회, 공람문 발송, 공람포스터 부착 등.  
 (3) 공람 대상자: 주민, 이해관계자, 전문가 등.  
 (4) 공람 일자: 2020년 3월 31일(토요일) 9:45:14.  
 (5) 공람 장소: 평창강 하류권역(분류 구간) 하천기본계획(변경) 및 하천-보양사업(보양사업) 현장.

2. 주민설명회 결과  
 (1) 주민설명회 개최: 본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(변경) 결과에 대해 주민 등에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함.  
 (2) 주민설명회 방법: 주민설명회 개최, 공람문 발송, 공람포스터 부착 등.  
 (3) 주민설명회 대상자: 주민, 이해관계자, 전문가 등.  
 (4) 주민설명회 일자: 2020년 3월 31일(토요일) 9:45:14.  
 (5) 주민설명회 장소: 평창강 하류권역(분류 구간) 하천기본계획(변경) 및 하천-보양사업(보양사업) 현장.

3. 주민설명회 참석 인원 및 참석률

구분	성명	연락처	참석 여부	비고
주민	김영희	010-1234-5678	참석	
	이민준	010-9876-5432	참석	
이해관계자	박지현	010-5678-9012	참석	
	정민준	010-3456-7890	참석	
전문가	최민준	010-2345-6789	참석	
	한민준	010-1234-5678	참석	

4. 주민설명회 결과 요약  
 (1) 주민설명회 개최: 본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(변경) 결과에 대해 주민 등에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함.  
 (2) 주민설명회 방법: 주민설명회 개최, 공람문 발송, 공람포스터 부착 등.  
 (3) 주민설명회 대상자: 주민, 이해관계자, 전문가 등.  
 (4) 주민설명회 일자: 2020년 3월 31일(토요일) 9:45:14.  
 (5) 주민설명회 장소: 평창강 하류권역(분류 구간) 하천기본계획(변경) 및 하천-보양사업(보양사업) 현장.

5. 주민설명회 결과 요약  
 (1) 주민설명회 개최: 본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(변경) 결과에 대해 주민 등에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함.  
 (2) 주민설명회 방법: 주민설명회 개최, 공람문 발송, 공람포스터 부착 등.  
 (3) 주민설명회 대상자: 주민, 이해관계자, 전문가 등.  
 (4) 주민설명회 일자: 2020년 3월 31일(토요일) 9:45:14.  
 (5) 주민설명회 장소: 평창강 하류권역(분류 구간) 하천기본계획(변경) 및 하천-보양사업(보양사업) 현장.

**강원도민일보** 본: 010-1234-5678 FAX: 010-1234-5678  
 평창: 010-9876-5432 FAX: 010-9876-5432  
 춘천: 010-5678-9012 FAX: 010-5678-9012

(2) 정보통신망 게재



(3) 비대면 주민설명회 자료 게재



1.3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

시·군	장 소	개최일자	참석주민 (참석자명단 기준)
평창군	방림면사무소 회의실	2020. 06. 23.(화), 11:00	9명
	평창읍사무소 회의실	2020. 06. 23.(화), 14:00	58명
영월군	주천면사무소 회의실	2020. 06. 24.(수), 11:00	21명
	남면사무소 회의실	2020. 06. 24.(수), 14:00	20명
	영월읍사무소 회의실	2020. 06. 24.(수), 16:00	10명

### 1.4 주민설명회 사진



2020년 06월 23일(화) 11:00 평창군 방림면사무소 회의실



2020년 06월 23일(화) 14:00 평창군 평창읍사무소 회의실





2020년 06월 24일(수) 11:00 영월군 주천면사무소 회의실



2020년 06월 24일(수) 14:00 영월군 남면사무소 회의실



2020년 06월 24일(수) 16:00 영월군 영월읍사무소 회의실

### 1.5 참석자 명부

평창강 하류권역(본류 구간) 하천기본계획(변경)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반영결과 <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>					평창강 하류권역(본류 구간) 하천기본계획(변경)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반영결과 <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>				
성명	주소	연락처	출생연도	직업	성명	주소	연락처	출생연도	직업
김			2022	10.14	김		26.7	1.28	
김			26.6	10.26	김		26.6	1.28	
김			26.4	11.08	김		26.9	1.24	
김			26.5	10.10	김		26.9	1.15	
김			26.7	10.18	김		26.7	1.25	
김			26.5	11.18	김		26.9	1.25	
김			26.7	12.20	김		26.9	1.25	
김			26.0	11.06	김		26.8	1.20	
김			26.4	11.10	김		26.6	1.24	
					김		26.4	1.24	

2020년 06월 23일(화) 11:00  
평창군 방림면사무소 회의실

2020년 06월 23일(화) 14:00  
평창군 평창읍사무소 회의실







평창강 하류권역(분류 구간) 하천기본계획(변경)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반영결과
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주요</th> <th>연차</th> <th>제 회차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36.5</td> <td>11.0</td> </tr> <tr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/tr> <tr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/tr> <tr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/tr> <tr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/tr> <tr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/tr> <tr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/tr> <tr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/tr> <tr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/tr> <tr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주요	연차	제 회차	비고				36.5	11.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<p>평창강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(변경) 및 하천시설관리규칙(제정, 전략환경영향평가서제정) &lt;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&gt;</p> <p>■ 장소 : 영월군 남면사무소 ■ 일시 : 2020.06.24. (수) 14:00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주요</th> <th>연차</th> <th>제 회차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36.5</td> <td>14.00</td> </tr> <tr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36.9</td> <td> </td> </tr> <tr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36.5</td> <td> </td> </tr> <tr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36.6</td> <td>14.20</td> </tr> <tr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36.6</td> <td>14.01</td> </tr> <tr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36.6</td> <td>14.01</td> </tr> <tr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36.7</td> <td>14.12</td> </tr> <tr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36.3</td> <td>14.10</td> </tr> <tr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36.9</td> <td>14.11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주요	연차	제 회차	비고				36.5	14.00				36.9					36.5					36.6	14.20				36.6	14.01				36.6	14.01				36.7	14.12				36.3	14.10				36.9	14.11					
구분	주요	연차	제 회차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36.5	11.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주요	연차	제 회차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36.5	14.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36.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36.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36.6	14.2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36.6	14.0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36.6	14.0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36.7	14.1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36.3	14.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36.9	14.1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2020년 06월 24일(수) 11:00 영월군 주천면사무소 회의실</p>	<p>2020년 06월 24일(수) 14:00 영월군 남면사무소 회의실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평창강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(변경) 및 하천시설관리규칙(제정, 전략환경영향평가서제정) &lt;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&gt;</p> <p>■ 장소 : 영월군 남면사무소 ■ 일시 : 2020.06.24. (수) 14:00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주요</th> <th>연차</th> <th>제 회차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36.5</td> <td>14.02</td> </tr> <tr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36.5</td> <td>14.05</td> </tr> <tr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36.9</td> <td>14.11</td> </tr> <tr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36.5</td> <td>14.16</td> </tr> <tr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36.5</td> <td>14.16</td> </tr> <tr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36.1</td> <td> </td> </tr> <tr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36.5</td> <td>14.20</td> </tr> <tr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36.5</td> <td>14.01</td> </tr> <tr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36.5</td> <td>14.17</td> </tr> <tr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36.5</td> <td>14.17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주요	연차	제 회차	비고				36.5	14.02				36.5	14.05				36.9	14.11				36.5	14.16				36.5	14.16				36.1					36.5	14.20				36.5	14.01				36.5	14.17				36.5	14.17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주요</th> <th>연차</th> <th>제 회차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36.9</td> <td>14.13</td> </tr> <tr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/tr> <tr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/tr> <tr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/tr> <tr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/tr> <tr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/tr> <tr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/tr> <tr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/tr> <tr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/tr> <tr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주요	연차	제 회차	비고				36.9	14.1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주요	연차	제 회차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36.5	14.0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36.5	14.0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36.9	14.1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36.5	14.1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36.5	14.1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36.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36.5	14.2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36.5	14.0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36.5	14.1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36.5	14.1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주요	연차	제 회차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36.9	14.1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2020년 06월 24일(수) 14:00 영월군 남면사무소 회의실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평창강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(변경) 및 하천시설관리규칙(제정, 전략환경영향평가서제정) &lt;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&gt;</p> <p>■ 장소 : 영월군 영월읍사무소 ■ 일시 : 2020.06.24. (수) 14:00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주요</th> <th>연차</th> <th>제 회차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36.7</td> <td>14.14</td> </tr> <tr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36.5</td> <td>14.14</td> </tr> <tr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36.1</td> <td>14.16</td> </tr> <tr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36.1</td> <td>14.16</td> </tr> <tr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36.2</td> <td>14.16</td> </tr> <tr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36.2</td> <td>14.16</td> </tr> <tr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36.4</td> <td>14.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주요	연차	제 회차	비고				36.7	14.14				36.5	14.14				36.1	14.16				36.1	14.16				36.2	14.16				36.2	14.16				36.4	14.00	<p>평창강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(변경) 및 하천시설관리규칙(제정, 전략환경영향평가서제정) &lt;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&gt;</p> <p>■ 장소 : 영월군 영월읍사무소 ■ 일시 : 2020.06.24. (수) 14:00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주요</th> <th>연차</th> <th>제 회차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36.7</td> <td>14.14</td> </tr> <tr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 </td> <td>36.1</td> <td>14.14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주요	연차	제 회차	비고				36.7	14.14				36.1	14.1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주요	연차	제 회차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36.7	14.1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36.5	14.1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36.1	14.1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36.1	14.1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36.2	14.1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36.2	14.1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36.4	14.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주요	연차	제 회차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36.7	14.1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36.1	14.1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2020년 06월 24일(수) 16:00 영월군 영월읍사무소 회의실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



 <p>경기도 영월군수 2017.3.1</p>	<p><b>붙임2</b> 진수지구 지장 및 축재계획 제외 건의</p> <p>과 라 권 명 : 평창강</p> <p>의 건 의 내 용 : 본계상의 2개소 진수지구 지장 및 평창위수지구 축재계획 제외</p>  <p>위 치 도 : 충청권 No.9-No.15+200 (영월군 남면 북말리 284)</p> <p>권 의 사 항 : 농림수산부 진수지구 지장</p>  <p>위 치 도 : 충청권 No.11+200-No.12 (영월군 남면 남말리 288-1)</p> <p>권 의 사 항 : 농림수산부 진수지구 지장 및 축재계획 제외</p>
 <p>위 치 도 : 충청권 No.42+000~No.43 (영월군 우원면 풍림리 472-15)</p> <p>권 의 사 항 : 위도리지구 진수지구 지장</p>	<p>주민주의권 제출서</p> <p>이 릳 명 : 영월군 우원면 풍림리 472-15 (주민)</p> <p>사 실 및 계 기 : 영월군 풍림리, 풍림산, 풍림계곡 주민의 풍림산 유수조류부 등기(영월군 472-15)에 대한</p> <p>의 건 의 사 용 허 락 : 이 [ ]</p> <p>주요내용에 대한 의견 :          1. 유수조류부 등기(영월군 472-15)에 대한          2. 유수조류부 등기(영월군 472-15)에 대한          3. 유수조류부 등기(영월군 472-15)에 대한</p> <p>주요내용에 대한 의견 :          유수조류부 등기(영월군 472-15)에 대한          유수조류부 등기(영월군 472-15)에 대한          유수조류부 등기(영월군 472-15)에 대한</p> <p>제 출 일 : 2017. 7. 26</p> <p>제 출 자 : 이 [ ]</p> <p>충주시환경국(주)영월지청</p> <p>충주시청</p> <p>충주시청</p> <p>충주시청</p>



<p>주변의견 제출서</p> <p>이름: 김 [redacted]</p> <p>주소: [redacted]</p> <p>주요내용: 평창강 하류권역(본류 구간) 하천기본계획(변경)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반영결과</p> <p>2020년 7월 20일</p> <p>평창강 하류권역(본류 구간) 하천기본계획(변경)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반영결과</p>	<p>주변의견 제출서</p> <p>이름: [redacted]</p> <p>주소: [redacted]</p> <p>주요내용: 평창강 하류권역(본류 구간) 하천기본계획(변경)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반영결과</p> <p>2020년 7월 20일</p> <p>평창강 하류권역(본류 구간) 하천기본계획(변경)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반영결과</p>
<p>주요내용: 평창강 하류권역(본류 구간) 하천기본계획(변경)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반영결과</p> <p>2020년 7월 20일</p> <p>평창강 하류권역(본류 구간) 하천기본계획(변경)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반영결과</p>	<p>주요내용: 평창강 하류권역(본류 구간) 하천기본계획(변경)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반영결과</p> <p>2020년 7월 20일</p> <p>평창강 하류권역(본류 구간) 하천기본계획(변경)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반영결과</p>



<p>● 평창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(변경) 주민참여사업(변경) 2020. 11. 20. *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주민의견 제출서</b></p> <p>이름: [redacted]          성명: [redacted]          주민번호: [redacted]          의견제출처: 주소: [redacted]</p> <p>평가서작성에 관한 의견          [redacted] 평창강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(변경) 주민참여사업(변경) 2020. 11. 20. *</p> <p>평창강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(변경) 주민참여사업(변경) 2020. 11. 20. *</p> <p>주소: [redacted]</p> <p>주민자치위원회장 직인</p> <p>주민자치위원회</p> <p>주민자치위원장 직인</p>	<p>● 평창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(변경) 주민참여사업(변경) 2020. 11. 20. *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주민의견 제출서</b></p> <p>이름: [redacted]          성명: [redacted]          주민번호: [redacted]          의견제출처: 주소: [redacted]</p> <p>평가서작성에 관한 의견          [redacted] 평창강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(변경) 주민참여사업(변경) 2020. 11. 20. *</p> <p>평창강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(변경) 주민참여사업(변경) 2020. 11. 20. *</p> <p>주소: [redacted]</p> <p>주민자치위원회장 직인</p> <p>주민자치위원회</p> <p>주민자치위원장 직인</p>
<p>● 평창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(변경) 주민참여사업(변경) 2020. 11. 20. *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주민의견 제출서</b></p> <p>이름: [redacted]          성명: [redacted]          주민번호: [redacted]          의견제출처: 주소: [redacted]</p> <p>평가서작성에 관한 의견          [redacted] 평창강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(변경) 주민참여사업(변경) 2020. 11. 20. *</p> <p>평창강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(변경) 주민참여사업(변경) 2020. 11. 20. *</p> <p>주소: [redacted]</p> <p>주민자치위원회장 직인</p> <p>주민자치위원회</p> <p>주민자치위원장 직인</p>	<p>● 평창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(변경) 주민참여사업(변경) 2020. 11. 20. *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주민의견 제출서</b></p> <p>이름: [redacted]          성명: [redacted]          주민번호: [redacted]          의견제출처: 주소: [redacted]</p> <p>평가서작성에 관한 의견          [redacted] 평창강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(변경) 주민참여사업(변경) 2020. 11. 20. *</p> <p>평창강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(변경) 주민참여사업(변경) 2020. 11. 20. *</p> <p>주소: [redacted]</p> <p>주민자치위원회장 직인</p> <p>주민자치위원회</p> <p>주민자치위원장 직인</p>



<p>●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의견조사 실시일 : 2020. 09. 10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주민의견 제출서</b></p> <p>사업명 : 평창강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(변경)          사업일 목적 : 상류부 방호교, 방류교, 홍수조절역 설치 등          사업지 : 평창군 평창읍 평창리 100-1          의견제출자 : 성명 [redacted] 주소 [redacted]</p> <p>평가서작성에 관한 의견  <b>권리 상실투 변경지피안수립 (이물감염의견수립 및 권장 편향 위약)</b></p> <p>공통의 개선에 관한 의견          - 지역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1차 1차 실시 [ ] , 2차 실시 [ ]          - 지역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불만사항을 신속히 처리한다.</p> <p>*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, 제14조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작성에 대한 불만사항은 1차로 불만사항 접수일 이후 14일 이내에 접수하여야 하며, 2차로 불만사항 접수일 이후 14일 이내에 접수하여야 한다.</p> <p>2020. 9. 6. [redacted] [redacted]</p> <p>평창강 하류권역주민대표회의장 성명 [redacted]</p> <p>의견제출자          주민의견 제출 → 접수 → 주민의견 처리 완료 → 평가서작성 완료</p> <p>주소 : 평창군 평창읍 평창리 100-1</p>	<p>●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의견조사 실시일 : 2020. 09. 10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주민의견 제출서</b></p> <p>사업명 : 평창강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(변경)          사업일 목적 : 상류부 방호교, 방류교, 홍수조절역 설치 등          사업지 : 평창군 평창읍 평창리 100-1          의견제출자 : 성명 [redacted] 주소 [redacted]</p> <p>평가서작성에 관한 의견  <b>권리 상실투 변경지피안수립 (다음용역의견수립 및 권장 편향 위약)</b></p> <p>공통의 개선에 관한 의견          - 지역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1차 1차 실시 [ ] , 2차 실시 [ ]          - 지역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불만사항을 신속히 처리한다.</p> <p>*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, 제14조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작성에 대한 불만사항은 1차로 불만사항 접수일 이후 14일 이내에 접수하여야 하며, 2차로 불만사항 접수일 이후 14일 이내에 접수하여야 한다.</p> <p>2020. 9. 6. [redacted] [redacted]</p> <p>평창강 하류권역주민대표회의장 성명 [redacted]</p> <p>의견제출자          주민의견 제출 → 접수 → 주민의견 처리 완료 → 평가서작성 완료</p> <p>주소 : 평창군 평창읍 평창리 100-1</p>
<p>●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의견조사 실시일 : 2020. 09. 10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주민의견 제출서</b></p> <p>사업명 : 평창강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(변경)          사업일 목적 : 상류부 방호교, 방류교, 홍수조절역 설치 등          사업지 : 평창군 평창읍 평창리 100-1          의견제출자 : 성명 [redacted] 주소 [redacted]</p> <p>평가서작성에 관한 의견  <b>평창강 하류권역 하천 기본계획(변경) 심의 및 이의제출 불합격한점 재검토요청사항을 해소위해, 변경안은 조속히 마쳐서 재차 심의위원 개척해 주시기 바랍니다</b></p> <p>공통의 개선에 관한 의견          - 지역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1차 1차 실시 [ ] , 2차 실시 [ ]          - 지역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불만사항을 신속히 처리한다.</p> <p>*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, 제14조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작성에 대한 불만사항은 1차로 불만사항 접수일 이후 14일 이내에 접수하여야 하며, 2차로 불만사항 접수일 이후 14일 이내에 접수하여야 한다.</p> <p>2020. 9. 6. [redacted] [redacted]</p> <p>평창강 하류권역주민대표회의장 성명 [redacted]</p> <p>의견제출자          주민의견 제출 → 접수 → 주민의견 처리 완료 → 평가서작성 완료</p> <p>주소 : 평창군 평창읍 평창리 100-1</p>	<p>●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의견조사 실시일 : 2020. 09. 10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주민의견 제출서</b></p> <p>사업명 : 평창강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(변경)          사업일 목적 : 상류부 방호교, 방류교, 홍수조절역 설치 등          사업지 : 평창군 평창읍 평창리 100-1          의견제출자 : 성명 [redacted] 주소 [redacted]</p> <p>평가서작성에 관한 의견  <b>다음용역의견수립하고 권장 편향 파악하여 변경계획수립</b></p> <p>공통의 개선에 관한 의견          - 지역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1차 1차 실시 [ ] , 2차 실시 [ ]          - 지역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불만사항을 신속히 처리한다.</p> <p>*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, 제14조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작성에 대한 불만사항은 1차로 불만사항 접수일 이후 14일 이내에 접수하여야 하며, 2차로 불만사항 접수일 이후 14일 이내에 접수하여야 한다.</p> <p>2020. 9. 6. [redacted] [redacted]</p> <p>평창강 하류권역주민대표회의장 성명 [redacted]</p> <p>의견제출자          주민의견 제출 → 접수 → 주민의견 처리 완료 → 평가서작성 완료</p> <p>주소 : 평창군 평창읍 평창리 100-1</p>

<p>● 호우피해방지용 하천개선사업 예산(예산) 1억 2천 500만 원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주변의견 제출서</b></p> <p>사업명: 평창강 하류권역 하천개선사업(본류)          사업장 위치: 평창읍 평창리, 평창읍, 평창읍, 평창읍, 평창읍, 평창읍          사업지: 평창읍평창읍 하천개선사업(본류)          의견제출자: 홍영 [redacted]          주소: [redacted]</p> <p>평가서제출에 관한 의견: <b>미수 방류처의 의견 수렴 현상 현행 하천구 변경 계획 수렴</b></p> <p>공통제 개정에 관한 의견: - 계획 변경사항에 대해 수 내 용기( ) 용기( ) , 용기( ) - 하천개선사업 용기( )로 변경하는 용기( ) 제출한다</p> <p>*환경영향평가서 작성용, 평가서 및 계획(변경)에 대한 평가서제출의 내용 및 공표후 처리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</p> <p>2020. 7. 6.          제출자: 김 [redacted]</p> <p>평창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</p> <p>제출일자: [redacted] → [redacted] → [redacted] → [redacted]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[redacted]</p>	<p>● 호우피해방지용 하천개선사업 예산(예산) 1억 2천 500만 원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주변의견 제출서</b></p> <p>사업명: 평창강 하류권역 하천개선사업(본류)          사업장 위치: 평창읍 평창리, 평창읍, 평창읍, 평창읍, 평창읍, 평창읍          사업지: 평창읍평창읍 하천개선사업(본류)          의견제출자: 김 [redacted]          주소: [redacted]</p> <p>평가서제출에 관한 의견: <b>해 급류 변경 계획 수렴 미수 방류처 수렴 및 현상 현행</b></p> <p>공통제 개정에 관한 의견: - 계획 변경사항에 대해 수 내 용기( ) 용기( ) , 용기( ) - 하천개선사업 용기( )로 변경하는 용기( ) 제출한다</p> <p>*환경영향평가서 작성용, 평가서 및 계획(변경)에 대한 평가서제출의 내용 및 공표후 처리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</p> <p>2020. 7. 6.          제출자: 김 [redacted]</p> <p>평창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</p> <p>제출일자: [redacted] → [redacted] → [redacted] → [redacted]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[redacted]</p>
<p>● 호우피해방지용 하천개선사업 예산(예산) 1억 2천 500만 원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주변의견 제출서</b></p> <p>사업명: 평창강 하류권역 하천개선사업(본류)          사업장 위치: 평창읍 평창리, 평창읍, 평창읍, 평창읍, 평창읍, 평창읍          사업지: 평창읍평창읍 하천개선사업(본류)          의견제출자: 홍영 [redacted]          주소: [redacted]</p> <p>평가서제출에 관한 의견: <b>수출 방류처의 의견 수렴 현상 현행 하천구 변경 계획 수렴</b></p> <p>공통제 개정에 관한 의견: - 계획 변경사항에 대해 수 내 용기( ) 용기( ) , 용기( ) - 하천개선사업 용기( )로 변경하는 용기( ) 제출한다</p> <p>*환경영향평가서 작성용, 평가서 및 계획(변경)에 대한 평가서제출의 내용 및 공표후 처리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</p> <p>2020. 7. 6.          제출자: 홍 [redacted]</p> <p>평창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</p> <p>제출일자: [redacted] → [redacted] → [redacted] → [redacted]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[redacted]</p>	<p>● 호우피해방지용 하천개선사업 예산(예산) 1억 2천 500만 원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주변의견 제출서</b></p> <p>사업명: 평창강 하류권역 하천개선사업(본류)          사업장 위치: 평창읍 평창리, 평창읍, 평창읍, 평창읍, 평창읍, 평창읍          사업지: 평창읍평창읍 하천개선사업(본류)          의견제출자: 최 [redacted]          주소: [redacted]</p> <p>평가서제출에 관한 의견: <b>현상 방류 하이기 하천 의견과 현상 하천 하천구 변경 계획 수렴</b></p> <p>공통제 개정에 관한 의견: - 계획 변경사항에 대해 수 내 용기( ) 용기( ) , 용기( ) - 하천개선사업 용기( )로 변경하는 용기( ) 제출한다</p> <p>*환경영향평가서 작성용, 평가서 및 계획(변경)에 대한 평가서제출의 내용 및 공표후 처리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</p> <p>2020. 7. 6.          제출자: 최 [redacted]</p> <p>평창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</p> <p>제출일자: [redacted] → [redacted] → [redacted] → [redacted]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[redacted]</p>



## 2.2 관계기관 의견수렴

### (1) 원주지방환경청

 <p><b>원주지방환경청</b></p> <p>청장 - 최진자 임수 [관공] 원주지방환경청가서(조암) 일동역전 앞길 [본청] 원주광역시(본류구간) 하천기본계획(변경)]</p> <p>1. 원주지방환경청내 원주지방환경청(본청) 10층 1005호(2023.5.22) 운영합니다. * 사업번호 : K202300190</p> <p>2. 주 기관에서 검토 요청한 '평창강 하류권역(본류구간) 하천기본계획(변경)'의 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 검토결과를 본청과 같이 알려드리니, '전략환경영향평가' 제10조 및 10부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원 주청과 협의 및 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(본안)를 작성하여 원 주청을 회람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본청 전략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검토결과 1부 - 끝 -</p> 	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본청원 하류권역(본류구간) 하천기본계획(변경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검토의견</b> 【 평창강 하류권역(본류구간) 하천기본계획(변경) 】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사업개요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계획위치 : 강원도 원주시, 일동동, 태성리 일대</li> <li>○ 계획규모 : 원주강 하류권역(본류구간) 33.30km</li> <li>○ 계획내용 : 총길이 289m, 400(2)50(1)리, 폐수시설(2)개소, 40(2)개소, 교량(2)개소 등</li> <li>○ 운영기관 : 원주시한국도관리청/계획수립 원주지방환경청(본청)</li> <li>○ 근 거 : 환경영향평가법, 제10조 및 10부 및 시행령 제10조 - 「해당법, 제10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</li> </ul> </div> <p><b>1 총괄</b></p> <p>D. 하천의 자연성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 최수준으로 준설이 있는 구간 등 필요한 구간에 한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생태환경이 양호한 구간은 원형보존 하는 등 하천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천의 생태환경을 관찰하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.</p> <p><b>2 계획의 적절성</b></p> <p>가. 상류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</p> <p>D. 물 사용계획과 상류계획,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및 부합여부, 하거 호수 및 수계로 인한 재하역제원할 등을 고려하여 하천의 자연성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.</p> <p>D. 중수역적용합계계획은 계획의 색역, 내용, 복구를 충족하는 계획으로서 지역방재의 안전이 되는 하천재해위험지구 지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,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자 하천재해위험지구로 선정된 지역 중 계획(하천가) 지) 고갈적으로 연계된 구간에 대해서 관련 내용 및 합계 하천기본계획서의 적절성을 검토·제시하여야 함.</p>
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본청원 하류권역(본류구간) 하천기본계획(변경)</p> <p>나. 대안 설정-분석의 적정성</p> <p>D. 최근 침수피해 현황과 원인, 침수범위, 재발 가능성으로 인해 보호되는 시설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홍수방어 대책(홍수관리구역 지정, 방벽 설치)을 수립 검토하여야 함.</p> <p>D. 축대 및 보, 호안제 등 시설 시 비침수상태를 가급적 원상대로 조성하고, 자연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.</p> <p>D. 물 사용은 환경지 적진을 고려하여 환경지 목표와 기존 유체를 원상대로 전라 및, 위쪽의 지기, 공법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수립하여야 함.</p> <p><b>3 입지의 타당성</b></p> <p>가. 자연환경지 보전</p> <p>1) 생물다양성·서식지 보전</p> <p>○ 사업대상 하천구간 중 침류부, 식생보존등급 1등급급 등 보전가치가 높은 하천구간은 사업시기에 따른 서식동물의 생활사 영향을 고려하는 등의 구체적인 생태계 영향을 분석하고, 수면식생 원형보존 등과 같은 구체적인 보전대책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.</p> <p>※ 침류부 : 하류, 부계정, 반담, 무도동, 우정리, 반포리, 구교동, 개촌리</p> <p>- 생태적 기능이 떨어진 하천의 합류지점은 하천의 자연적인 연속성을 보전하여 다양한 미소서식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</p> <p>○ 연못 및 둔전조사에서 수면 및 하천역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다양한 생물종(조류)이 확인된 데, 사업으로 인한 수계환경변화 영향을 최소화 하고 하천-수면-연못 생태계 연결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계획에 반영 하여야 함.</p> <p>- 원목유해제의 분석이후를 검토하고 분석이 확인되었을 경우 분석지 원형보전을 위한 구역으로 명시</p>	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본청원 하류권역(본류구간) 하천기본계획(변경)</p> <p>○ 하천구역의 정리는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서식 생물과 생활사를 고려 하여 이를 일정기간(월)지정 또는 계절별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함.</p> <p>○ 연못과 원상을 보하는 하천 구간의 정리는 강우기를 활용하도록 공사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, 연못 수량을 유지하는 하천은 수중생물의 번식기 및 산란기를 가급적 피하여 공사를 실시하도록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.</p> <p>○ 다양한 생물종(조류)이 출현하였거나 둔전조사에서 확인된 데, 어류의 출현 및 서식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·반영하여야 함.</p> <p>○ 수면부의 다양한 식물군락은 최대한 보전하고, 추경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식생에 대해서는 어류의 분포를 제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 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.</p> <p>○ 관화지, 생태계 보전 식물상 분포지 등지는 수변생태계의 현안 문제일 이므로, 복기 및 관리방안을 함께 고려한 생태계획을 마련하여 반영 하여야 함.</p> <p>○ 습적으로지역 내 기존 계획에 대한 보강을 계획하고 있으나, 물-식물 및 서식동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계획 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·제시하여야 함.</p> <p><b>2 저형 및 생태계의 보전</b></p> <p>○ 하천의 자연스러움 골짜기 하천의 자연성 및 자갈 등은 최대한 자연 상태를 유지하고, 기존의 직벽식(아수, 손바 등) 호안공에 대해서는 절기 등을 검토하여 하천의 자연성을 최대한 복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.</p> <p>○ 호안은 지수의 측면, 생태계보전 및 환경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다목적인 호안공법을 비교·평가하여 제시하고, 생태 호안공법에 대한 근거자료를 토대로 설치계획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.</p> <p>- 호안 공법별 허용 소용량을 각각으로 제시하고, 대상구간 내 합설 가능한 최대 소용량과 비교하여 안정성 및 타당성 여부 검토</p>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본질문 하류권역(본류구간) 하천기본계획(변경)</u></p> <p>○ 기존의 콘크리트 구조물(안천, 용매 하도 조성된 구간)에 대해서는 철거 등을 검토하여 하천의 자연성을 최대한 복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·제시하여야 함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용매, 파라넷의 경우 적용 구간별로 분서 다양성을 제정토하고, 적용 시 구체적인 사용, 근거 자료를 함께 제시</li> </ul> <p>○ 배내리 보지이용현황 등에 따라 제방 및 호안계획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, 고수부지, 배전부지 등을 충수어로 확보하는 등의 비수조리 대책을 검토·제시하여야 함.</p> <p>○ 해당 하천의 자연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천의 시설물 철거 및 하도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보, 낙차공터 경우 개발 시설물에 대한 준차 필요성 등을 검토·제시하며, 여울과 초지 반목을 통해 낙차를 해소하는 방법 등을 방향 검토하여 가능 저어 또는 상설된 구조물에 대하여는 절거하는 방안 검토·제시</li> <li>- 이도의 경우 해당 하천의 환경특성(수질, 수위, 유속 등) 생태적 현황 (적의 이용 등) 등을 고려하여, 하천 상하류간 여울 이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형 하도지 어도 등 적용 검토</li> </ul> <p>3) 주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</p> <p>○ 축대 및 초인, 교량, 낙차 등 각종 구조물은 하천경관 및 주변 식생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으로 계획·시행하며, 시설물은 주변 경관유형별 분기 및 영향예측을 통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형태, 색채 등을 선정하여 경관계획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.</p> <p>4) 수환경의 보전</p> <p>○ 단속적 충수당 고기에 따라 계획하천 원 구간에 동일한 수준의 충수 양이 대책을 수립하기보다는 향후 하천공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충수 안정성, 하천의 자연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당 침범에 대한 침수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본질문 하류권역(본류구간) 하천기본계획(변경)</u></p> <p>지해 가능성, 제방 보강을 통해 보호되는 면적과 시설물의 충수로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, 지수적으로 문제가 있는 구간을 중심으로 재정규정의 재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.</p> <p>○ 파도라거나 일몰적인 하류확장은 지양하고 기존 제방 상태, 하천시설물, 도시어울 현황, 적용·지표 등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수소통에 필요한 적정 하도를 결정하여야 함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급회 곡률구간에 대해 기수침 당시의 재수계획 및 차고준설, 친수공간 조성 등과 관련한 시설물 계획을 조사·제시하고 각 내용별로 급회 계획과 비교하여 제시</li> <li>- 침재기(중수위 고가)를 일몰적으로 적용하여 하도 전구간의 지수안정성을 확보하는 시설물 위주의 과도한 지수계획 수립 지양</li> <li>- 우수한 안림역(대저지연도 1등급지 등)과 연계된 하천 구간은 수변경관 및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자연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전하는 방안 검토</li> <li>- 하류확장 및 하도정비로 인한 건천화·계천화 등 지형도 불균형한 준설 및 하상 정돈과 계획은 배제</li> <li>- 계수·결 충수위에 대한 제방 여유고의 부족도가 고려 없거나 현 계획과 계획 하폭이 적어지 미미한 경우, 현 하류를 유지한 상태에서 제방 여유고를 확보하는 방안 검토</li> <li>- 제방으로 인해 보호되는 시설의 면적이 적거나 저지현황의 여유고가 미미한 수은일 경우, 침수 가능성을 검토한 후 제방계획 수립 여부를 판단</li> <li>- 계가설이 계획된 교량 등 시설이 충분한 경우, 여유고와 침수깊이 다소 부족하다라도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거나 최근 신설된 교량에 대해서는 가급적 존치하는 방안을 검토</li> </ul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본질문 하류권역(본류구간) 하천기본계획(변경)</u></p> <p>나. 생활환경의 안정성</p> <p>1) 환경기준에 부합성</p> <p>○ 제시된 하천 저질 조사 결과(중기수 300-300%) 중기수 및 정수처리 단계에 대해서만 분석을 실시한 바, 하천 저질에 대한 조사는 '하천·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(국립환경과학원 제90-007호, '13.11.16)'을 참고하여 제시된 모든 항목(중기수 포함)에 대한 오염도를 평가하여야 함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조사시점 평가 결과가 '나쁨' 단계 이상으로 준질량 경우, 오염도 개선을 위한 저지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시행</li> </ul> <p>※ 저질 저질 추가 조사를 위한 저질 건설은 주변 오염원 시료 분석을 고려하여야 하며, 오염도 평가용 위한 저지보 대책 및 저지조치에 수질오염방지시설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하여야 함</p> <p>○ 소음·진동 예측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저질에 대해 저질 저감방안을 수립·제시하고, 저질시를 설치 후에도 소음·진동 예측결과가 기준을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 저감방안을 검토·제시하여야 함.</p> <p>2) 하천-에너지 순환의 효율성</p> <p>○ 급회 계획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감원도 차원 순환기본계획 및 차원순환시행계획을 반영하여 폐기를 처리계획을 수립 하여야 함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차원순환시행계획 내 폐기를 위한 감원화 목표, 순환이용률 목표, 이를 달성하기 위한 (예)수원전지함을 명시하고 이를 반영한 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</li> </ul> <p>4 기타 사항</p> <p>○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,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(6.30보조지 포함) 및 이에 대한 반영여부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, 관련 내용의 반영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, 설명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본질문 하류권역(본류구간) 하천기본계획(변경)</u></p> <p>○ 평가서에 제시하는 모든 자료(도면, 조서 등)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해상도, 글꼴으로 제시하여야 함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'환경영향평가서'를 작성 등에 관한 규정(환경부고시 제17.11.27)에 따라 "시안생태환경분야의 환경영향 평가조사서", "환경영향평가서"에 대해 계획의 "제출서류"를 작성·제출하여야 함.</li> <li>- 자연생태환경 분야 현지조사서는 수기로 작성한 조서로 사본으로 제출 하되, 조사자, 조사 지역, 자료 등 세부 작성항목 누락 금지</li> </ul> <p>○ 평가서 작성 당시 참여 기술인력 현황(외도급 포함)은 실제 참여한 기술인력과 평가항목별 참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평가서 작성 및 검토, 문헌 조사 및 현지조사 참여 등</li> </ul> <p>○ '환경영향평가법', 제16조제5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할 행정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지 소속, 직책, 설명을 제시하여야 함.</p> <p>○ 해당 계획부지는 열질 환반도 습곡구조지역 내 일부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추후 사업 착공 이전에 '습곡보전법', 제13조에 따라 습곡 보호지역에서 행위허가를 작하고 추진해야 함. 문.</p>

(2) 강원도



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강 원 도</b></p> <p>수신 원주시환경토목건설(환경)부서계획과 (강주) 평창강 하류권역(분류 구간) 하천기본계획(변경)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(후2차)에 대한 의견 수렴 1. 원주시환경토목건설(환경)부서계획과-16981000-3-22,1로 전연입니다. 2. 평창강 하류권역(분류 구간) 하천기본계획(변경)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(후2차) 검토 의견을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1조 제4항에 따라 불합치 결과 확인하였으나 일부에 불합치하지 않습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강 원 도</b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>주소</td> <td>소재지</td> <td>전화번호</td> <td>팩스번호</td> </tr> <tr> <td>원주시</td> <td>강원도 원주시 원주1로 1 (30000)</td> <td>020-830-11000</td> <td>020-830-11000</td> </tr> <tr> <td>사무</td> <td>020-830-11000</td> <td>020-830-11000</td> <td>020-830-11000</td> </tr> <tr> <td>팩스</td> <td>020-830-11000</td> <td>020-830-11000</td> <td>020-830-11000</td> </tr> </table>	주소	소재지	전화번호	팩스번호	원주시	강원도 원주시 원주1로 1 (30000)	020-830-11000	020-830-11000	사무	020-830-11000	020-830-11000	020-830-11000	팩스	020-830-11000	020-830-11000	020-830-11000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- 평창강 하류권역(분류 구간) 하천기본계획(변경) -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</b></p> <p><b>1 계획개요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계획 명: 평창강 하류권역(분류 구간) 하천기본계획(변경)</li> <li>○ 용 지: 강원도 원주군, 평창군, 개천시 일원</li> <li>○ 사업규모: 평창 대곡천 합류점 ~ 평원 현상 합류점 90.2km</li> <li>○ 수립-승인기관: 원주시환경토목건설</li> <li>○ 사업내용: 총계 9.12km, 보축 62.00km, 교 12개소, 교량 35개소, 특수시설 2회개소</li> </ul> <p><b>2 관련근거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9조(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)</li> <li>○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2조(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의 작성)</li> </ul> <p><b>3 검토의견</b></p> <p>□ 총 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본 계획은 평창강 하류권역의 하천기본계획 변경으로 계획지구 및 주변지 환경지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</li> <li>○ 사업 시행 시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 발생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또는 있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,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</li> <li>○ 본안 작성 시 아래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, 의견 중 반영이 어려운 항목은 그 사유와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</li> </ul>
주소	소재지	전화번호	팩스번호														
원주시	강원도 원주시 원주1로 1 (30000)	020-830-11000	020-830-11000														
사무	020-830-11000	020-830-11000	020-830-11000														
팩스	020-830-11000	020-830-11000	020-830-11000														
<p>□ 세부 검토의견</p> <p><b>1. 계획의 적절성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본 계획 수립 시 공간계획(국토종합계획, 강원도 종합개발계획, 도시기본계획 등)과의 연계성, 무합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함</li> </ul> <p><b>2. 입지의 타당성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자연환경의 보전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업부지와 환경영향보전 용도지역(생태경관보전지역, 상수원보호구역 등) 간의 이격거리를 사전 확인하여 영문위기를 주요 일제도로개지 등 각종 보호 대상생물의 서식 공간을 훼손하지 아니하여야 함</li> <li>- 자연성이 우수한 지역 등 보전 가치가 있는 지형 지질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여 과도한 지형 훼손으로 인한 식생 훼손 및 경관 부조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</li> </ul> </li> <li>○ 생활환경지 개선성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질권, 대기질, 소음 진동, 폐기물 등 환경분야 전반의 <b>종합법에 따른 환경기준을 준수</b>하여야 하며, 주변 정문시설과의 이격거리 확보, 저압시설 설치 등 <b>적절한 대책을 마련</b>하여야 함</li> </ul> </li> <li>○ 사회-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개발 시 주민 사전협의 등 <b>후변 민원피해 영향을 최소화</b>하여야 하며, 사업의 실시가 사회-경제 환경과 조화로운 조화를 이뤄 지역사회의 생활 환경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함</li> </ul> </li> </ul> <p>□ 기타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본 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필터급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, 사업의 인허가 또는 승인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 17에서 제11호 서식준 도 환경과로 통보하여야 함</li> </ul>	<p>&lt; 공 란 &gt;</p>																



(3) 평창군

○ 의견 없음


(4) 영월군

 <p>영월군</p> <p>주소: 평창지방자치청(하천관리과)</p> <p>전화: 영월군 하류권역(분류 구간) 하천기본계획(변경) 전략환경영향평가(후천) 결과 의견 통보</p> <p>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</p> <p>2. 평창지방자치청 하천관리과-110(61200-0522)로써 관내 하천의 관리에 매진한 "평창강 하류권역(분류 구간) 하천기본계획(변경)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(후천)"에 대하여 "환경영향평가법"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필요한 의견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붙임: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서 검토의견(1쪽장)</p>  <p>영월군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주소</td> <td>영월군</td> <td>전화번호</td> <td>0333-21-3811</td> <td>팩스번호</td> <td>0333-21-3811</td> </tr> <tr> <td>시명</td> <td>영월읍</td> <td>전화번호</td> <td>0333-21-3811</td> <td>팩스번호</td> <td>0333-21-3811</td> </tr> <tr> <td>우</td> <td>33200</td> <td>이메일</td> <td>ymg@ymg.go.kr</td> <td>홈페이지</td> <td>http://www.yongweol.go.kr</td> </tr> <tr> <td>전화번호</td> <td>033-21-3811</td> <td>팩스번호</td> <td>033-21-3811</td> <td>이메일</td> <td>ymg@ymg.go.kr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6">영월군 21개 읍면 행정청 1871-0000</td> </tr> </table>	주소	영월군	전화번호	0333-21-3811	팩스번호	0333-21-3811	시명	영월읍	전화번호	0333-21-3811	팩스번호	0333-21-3811	우	33200	이메일	ymg@ymg.go.kr	홈페이지	http://www.yongweol.go.kr	전화번호	033-21-3811	팩스번호	033-21-3811	이메일	ymg@ymg.go.kr	영월군 21개 읍면 행정청 1871-0000						<p><b>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</b> (평창강 하류권역(분류구간) 하천기본계획(변경))</p> <p>1. 자연환경의 보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생물다양성-식생의 보전을 위한 문진조사는 「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보고서, 2003, 환경부, 등」 참조했으나 영월 천연기념물보호지역의 경우 일부 영월 보호구역이 해당되어 「2004 숲지보전지역 지정고시, 2004, 환경부,」 참조를 추가 보완할 필요가 있음.</li> <li>○ 영월 천연기념물보호지역의 경우 조류계류가 있는 등 공사시 남양이 등 일정보호구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식생 여부 등을 정기조사하여야 하며 식생으로 인한 서식생태계 확인 및 경우 별다른 피해를 불하여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.</li> <li>○ 민진조사 시 발견된 생태오염생물(물산덩굴, 단풍잎제비꽃 등)은 광역기치인 관내에서 체계적인 조사-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나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함.</li> </ul> <p>2. 생활환경의 안정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기질 및 소음-진동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차광막, 해당지역 주민들과 협의하여 저감시설 설치지침 및 규모 등을 결정하고 필요시 추가 저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.</li> <li>○ 공사로 토사유출로 인하여 파편에 도시가 유입 피해 발생을 방지 시 공사를 지체하고 공사부지 보수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임시침결기, 오탁방지막 등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최소화 하여야 함.</li> </ul> <p>3. 사회-경제환경과의 조화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축적계획에 따라 자연적 평가 등 공사의 직·간접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</li> </ul>
주소	영월군	전화번호	0333-21-3811	팩스번호	0333-21-3811																										
시명	영월읍	전화번호	0333-21-3811	팩스번호	0333-21-3811																										
우	33200	이메일	ymg@ymg.go.kr	홈페이지	http://www.yongweol.go.kr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화번호	033-21-3811	팩스번호	033-21-3811	이메일	ymg@ymg.go.kr																										
영월군 21개 읍면 행정청 1871-0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&lt; 공 란 &gt;</p>	<p>&lt; 공 란 &gt;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(5) 충청북도

	<p align="center">- 평창강 하류권역(본류구간) 하천기본계획(변경) - 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 검토의견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개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명 : 평창강 하류권역(본류구간) 하천기본계획(변경)</li> <li>○ 위치 : 증원도 평창군, 영월군, 제천시(총면적 0.7km<sup>2</sup> 구간 포함) 일원</li> <li>○ 규모 : 평창강 하류권역(본류구간) 0.3.20ha</li> <li>○ 계획 수립기관 및 승인기관 : 원주지방환경관리청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검토의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본 계획은 「하천법」 제25조에 의한 하천기본계획으로 상위계획과 부합하게 추진하여야 하며,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[별표2]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원주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함.</li> <li>○ 사업시행으로 인한 동식물상하 서식, 먹이원 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환경부의 “대체서식지 조성 - 원리 환경영향평가 지침”(2015년1월)을 참고하여 동원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서식지를 조성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함.</li> <li>○ 아경동물의 주요 번식기 및 산란시기(3~6월 및 9~10월)를 지을철새 도래기 등을 최대한 피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사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, 향후 멸종요종의 주요 서식지가 양전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추가적인 보전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.</li> <li>○ 본 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추진 시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, 본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후 사업계획 등 인·허가 시 개발(특수) 면적에 해당하는 협력금을 확보 사업계획에 반영 추진하여야 함.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사 시 배산민지, 소문·관동, 도시유출물 주입피해 및 하천수질 및 수생태계에 악영향이 우려되므로 해당 유역의 갈우 및 지형적인 특성(갈우상, 갈우하, 비점오염원 등)을 고려하여 하천수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 후 하천과 유역특성에 맞는 친환경적인 저감 방안을 수립하고 지연형 하천으로 조성·유지함이 바람직함.</li> <li>○ 사업 시행 시 환경관련 제반규정(배산민지개발 사업신고, 특별공사 사전신고 등)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하며,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절 처리하여야 함.</li> <li>○ 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바, 공사 시 녹색제품을 적극 구매하여야 함.</li> <li>○ 본 사업의 공사 및 운영 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 발생 및 부적절 예측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고려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저감방안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·시행하여 인명피해 및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.</li> </ul>	<p align="center">&lt; 공 란 &gt;</p>

(6) 제천시

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천시</b></p> <p>수신: 평창강 하류권역(본류 구간) 하천기본계획(변경)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 수렴 결과</p> <p>제목: 평창강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(변경) 주민 전략환경영향평가조사서에 대한 의견 제출</p> <p>1. 표주지정국도표기법 차질(제천시-1506호(2020. 9. 22.)에 관련됩니다.</p> <p>2. 평창강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(변경) 전략환경영향평가조사서에 제출한 의견에 대한 무리시, 이 의견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불응시 되어 제출합니다.</p> <p>붙임: 의견서 1부, 끝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천시</b></p> <p>주수관: <b>홍성우</b> (담당부서: <b>환경부</b>)   담당자: <b>김민우</b> (담당부서: <b>환경부</b>)          주소: <b>제천시</b>   전화: <b>033-250-1111</b>   팩스: <b>033-250-1111</b>          이메일: <b>jeon@jeon.go.kr</b>   홈페이지: <b>http://www.jeon.go.kr</b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 평창강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(변경) 소인에 대한 의견서 &gt;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의견내</th> <th>처장내용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제천시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평창강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공사구간 내에 제천시 상수도 관수 중앙차인 상지취수장이 위치하고 있기에 원활한 관수 공급을 위하여 상지취수장 인근에 2중 교차당지착을 설치·동행하여 무작정일 확산을 최소화하여야 함.</li> <li>○ 또한 성지는 교차당지착을 포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주기의 정검으로 공사체재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함.</li> </ul> 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의견내	처장내용	비고	제천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평창강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공사구간 내에 제천시 상수도 관수 중앙차인 상지취수장이 위치하고 있기에 원활한 관수 공급을 위하여 상지취수장 인근에 2중 교차당지착을 설치·동행하여 무작정일 확산을 최소화하여야 함.</li> <li>○ 또한 성지는 교차당지착을 포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주기의 정검으로 공사체재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함.</li> </ul>	
의견내	처장내용	비고					
제천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평창강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공사구간 내에 제천시 상수도 관수 중앙차인 상지취수장이 위치하고 있기에 원활한 관수 공급을 위하여 상지취수장 인근에 2중 교차당지착을 설치·동행하여 무작정일 확산을 최소화하여야 함.</li> <li>○ 또한 성지는 교차당지착을 포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주기의 정검으로 공사체재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함.</li> </ul>					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 공 란 &gt;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 공 란 &gt;</p>						

### 2.3 주민의견수렴 및 조치계획

〈 표 7.2.2 - 1 〉 주민의견 수렴 결과

구 분	주 민 의 건	반영여부(미반영 사유)	비 고
평창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상리보를 수위 상승 시 넘어가는 보로 요청하며, 보 위쪽의 제방 높이를 낮게 조정 요청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방증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평창군과 협의후 대상보를 가동보로 계획</li> </ul>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도둔리 진바리길 제방(약 1.3km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청함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방 상승 : 일체 반대(진바리길)</li> <li>- 제방 폭 증가 : 국유지 하천까지 인정 (단, 실시계획에 배수로 설치 요망)</li> <li>- 하천구역지정폐지 : 사유지에 지정된 하천구역(하천법 제10조제1항 근거)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진바리길 여유고 부족으로 보축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전원주택 등이 신규 조성되어 강성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하류부 부제철거 및 하상정리를 통하여 수위를 저하시켜 보축계획을 제외</li> </ul>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도둔리 진바리길 일원은 2003년 제방 축조 후 한번도 범람하지도 않았고 위험수위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지금 상태로도 충분할 것이며, 제방을 더 높일 필요를 느끼지 않음에 의견을 제출함.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 특히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사업은 지양하였으면 함</li> </ul>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도둔리 진바리길 지역) 수정안대로 (현 상태 그대로) 보전 요망. 특히 제방 축조 절대 반대 (외 다수 "제방계획 반대" 의견)</li> </ul>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진바리 하천제방공사를 2003년도 정비 후 2020년 현재까지 제방의 절반도 안 되는 강수량 임에도 제방공사(하천정비 사업)를 한다는 것은 반대 입장임</li> </ul>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장 확인 후 원 계획안 수정 요함. 주민들은 원 계획안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자자함</li> <li>○ 현장 방문하여 적절한 높이인지 조사 요함.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계획안을 수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</li> <li>○ 마을을 방문하여 의견 청취·수렴하고 현장 현황 파악 후 변경 계획(안) 수립 요함 (외 동일 의견 다수)</li> </ul>		

(표 계속)

구 분	주 민 의 건	반영여부(미반영 사유)	비 고
평창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방 높이는 충분한 것 같은데 높인다면 인근 토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높이는 것이 필요</li> <li>○ 본인 해당 지역(천동리 113-(미상), 117-1, 117-2, 118-1)은 벌써 3번이나 침수되었는데 대책 요청(배수펌프장 요청함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해당 지역은 여유고 부족으로 인하여 보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내수배제를 위하여 배수통관 능력검토를 실시하고 개량계획을 제시함</li> </ul>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지답사 후 제방 변경 계획(안) 수립. 마을 방문하여 의견 수렴 및 현장 현황을 파악하여 천동길 제방을 1m 이하로 계획(안)을 줄여줄 것 요청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천동리 구간은 당초 보축계획을 수립하였으나 3회에 걸쳐 마을주민 설명회를 실시하여 홍수량 증가 사유 및 확폭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확폭계획으로 변경함</li> </ul>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실측 및 계획한 것에 30% 증가 반대함(6,000톤)</li> </ul>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평창강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(안) 설명 시 미비점, 불합리한 점, 거주자 요구사항들이 제시된 바, 변경(안)을 조속히 마련하여 재차 설명회를 해주기 바람</li> </ul>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평생 응암리에서 거주한 어르신들에게 문의한 바, 응암리에 물이 들어온 것은 제방 끝 쪽이 다른 곳보다 낮아서 그 쪽으로 물이 들어오니 약간만 높이면 물이 들어오는 일이 없다고 함. 준설 및 제방 끝 쪽 높이만 올리면 될듯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응암리는 상하류 대비 협착부로 확폭이 필요함에 따라 사유지 편입 및 가옥철거에 대한 불가피성을 제시하고 동의를 얻음</li> </ul>	반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평창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계획안임. 미래 100년과 현재가 공존할 수 있는 안을 시간을 가지고 군민과 협의해 계획해 주길 바라며, 10년 만에 다시 거론된 하천기본계획이 단지 시효 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길 바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뿐만 아니라 마을 단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평창군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치수대책을 수립함</li> </ul>	반영	

(표 계속)

구 분	주 민 의 건	반영여부(미반영 사유)	비 고
영월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(영월군 북면 문곡리 1581-1 지역) 2006년도의 큰 홍수를 겪으며 불안해 하며 살고 있음. 평창강과 문곡천의 합수머리에 위치하여 항상 홍수 위험에 불안하니 홍수지구로 지정 요청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문곡리 1581-1 지역은 평창강 지류하천으로 추후 지방하천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별도 개최할 계획임</li> </ul>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(충북 제천시 송학면 장곡리 산2번지) 편입 여부, 편입된다면 목적·사유·범위 등, 편입 시 보상받는 지원사항 등에 대하여 문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해당 구간은 산지구간으로 하천구역 편입에 대한 목적 및 사유를 별도로 설명함</li> </ul>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영월군 남면 북쌍리 150-9, 171 농경지 토사 유출로 인하여 영월군 남면 북쌍리 1004-3 일대 호안(설치)구역 지정 요청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포락이 발생하는 구간에 대하여 고수호안 계획을 수립함</li> </ul>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문개실 외 2개소 친수지구 지정 및 평창우1지구 축제계획 제외 등 요청.</li> <li>-평창강 No.9~10+200(영월군 남면 북쌍리 206) 지역 문개실지구 친수지구 지정 요망</li> <li>-평창강 No.11+800~13(영월군 남면 연당리 868-1) 지역 북쌍지구 친수지구 지정 및 축제계획 제외 요망</li> <li>-평창강 No.42+600~43(영월군 주천면 판운리 474-15) 지역 미다리지구 친수지구 지정 요망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친수지구 지정 요청구간은 마을이 인접하여 주민들의 활용가치가 높아 영월군에서 정원조성 계획구간 등 친수지구로 지정하였음</li> </ul>	반영

2.4 주민(관계기관) 의견에 따른 반영내용

〈 표 7.2.3 - 1 〉 관계행정기관 의견수렴 결과

구분	검토의견	조치결과	비 고
원주 지방 환경 청	<p>□ 총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하천의 자연성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 치수적으로 문제가 있는 구간 등 필요한 구간에 한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생태환경이 양호한 구간은 원형보전 하는 등 하천이 본래 지니고 있는 자연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아래의 검토내용을 반영하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</li> </ul>	-	-
	<p>□ 계획의 적정성</p> <p>가.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동 사업계획과 상위계획,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및 부합 여부, 과거 호우 및 수해로 인한 재해피해현황 등을 고려하여 하천의 자연성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상위계획,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및 부합 여부를 검토하여 제시하였음.</li> <li>○ 과거 호우 및 수해로 인한 재해 피해현황 등을 고려하여 하천의 자연성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·제시하였음</li> </ul>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재해의 예방, 대응, 복구를 총괄하는 계획으로서 지역방재의 근간이 되는 하천재해위험지구 지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,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재해위험지구로 선정된 지역 중 계획하천과 직·간접적으로 연계된 구간에 대해서 관련 내용 및 금회 시설물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·제시하여야 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영월군, 평창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검토하여 하천재해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해당시설물(제방, 교량 등)의 개량계획을 수립·제시함</li> <li>○ 재해위험지구 지정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</li> </ul>	반영
	<p>나. 대안 설정·분석의 적정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최근 침수피해 현황과 원인, 침수범위, 제방 보강으로 인해 보호되는 시설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적 홍수방어 대안(홍수관리구역 지정, 천변저류지 등)을 우선 검토하여야 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최근 침수피해 현황 및 원인, 침수범위, 제방 보강으로 인해 보호되는 시설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홍수관리구역 지정 및 천변저류지 등의 친환경적인 홍수방어 대안을 제시하고 검토하였음</li> </ul>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축제 및 보축, 호안계획 수립 시 비탈경사를 가급적 완경사로 조성하고, 자연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자연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비탈면 경사 대안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으며, 지형 여건상 완경사 제방이 불가능한 일부 구간(비탈경사 1:2.0 등 계획)을 제외하고 축제 및 보축계획은 하천설계기준에 의거 비탈경사를 1:3.0으로 결정하였음</li> </ul>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동 사업은 환경적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적 목표와 기준 유지를 전제로 전략과 방법, 위치와 시기, 공법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수립하여야 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 및 환경적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적 목표와 기준 유지를 전제로 전략과 방법, 위치와 시기, 공법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음</li> </ul>	반영 p.21~32

(표 계속)

구분	검토의견	조치결과	비 고
원주 지방 환경 청	<p>□ 입지의 타당성 가. 자연환경의 보전 1) 생물다양성·서식지 보전 ○ 사업대상 하천구간 중 합류부, 식생 보전등급 Ⅲ등급지 등 보전가치가 높은 하천구간은 사업시기에 따른 서식동물의 생활사 영향을 고려하는 등의 구체적인 생태계 영향을 분석하고, 수변식생 원형보전 등과 같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보전대책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 ※ 합류부 : 한강, 문곡천, 연당천, 무도천, 주천강, 판운천, 고길천, 계촌천</p> <p>-생태적 기능이 활발한 하천의 합류 지점은 하천의 자연적인 연속성을 보전하여 다양한 미소서식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</p>	<p>○ 사업대상 하천구간 중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, 별도관리지역(습지보호지역, 야생생물보호구역), 식생보전등급 Ⅲ등급지 등 보전가치가 높은 하천구간에 대한 영향분석 및 보전대책을 수립·제시하였음</p>	반영
	<p>-생태적 기능이 활발한 하천의 합류 지점은 하천의 자연적인 연속성을 보전하여 다양한 미소서식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</p>	<p>-지류합류부(주천강, 판운천, 문곡천 등)는 자연적 생태환경이 우수하여 현재 식생, 다양한 서식처 등이 잘 조성되어 있어 현 상태를 최대한 보존토록 계획함</p>	반영
	<p>○ 현지 및 문헌조사에서 수변 및 하천역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확인된바, 사업으로 인한 수계환경변화 영향을 최소화하고 하천-수변-산림 생태계 연결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-흰목물떼새의 번식 여부를 검토하고 번식이 확인되었을 경우 번식지 원형보전을 위한 구역으로 명시</p>	<p>○ 본 기본계획 수립시 수계환경변화 영향을 최소화하고 하천-수변-산림 생태계 연결성을 고려함 -계획구간 내 흰목물떼새의 번식 여부 및 가능성에 대해 검토, 제시하였으며, 공간환경 관리계획 수립시 보전지구로 설정하였음</p>	반영
	<p>○ 하천구역의 정비는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서식 생물의 생활사를 고려하여 이를 일정 기간별(격월제 또는 계절별)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함</p>	<p>○ 하천구역의 정비는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며, 서식 생물의 생활사를 고려하여 시행하겠음</p>	반영
	<p>○ 건천화 현상을 보이는 하천 구간의 정비는 갈수기를 활용하도록 공사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, 연중 수량을 유지하는 하천은 수중생물의 번식기 및 산란기를 가급적 피하여 공사를 실시 하도록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</p>	<p>○ 가급적 공사시기는 하천유량이 적은 갈수기에 실시하며, 수중생물의 번식기 및 산란기에는 가급적 공사를 지양하여 산란율과 부화율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임</p>	반영
<p>○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출현하였거나 문헌조사에서 확인된바, 이들의 출현 및 서식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·반영하여야 함</p>	<p>○ 추후 구체적 사업내용이 확정되는 개발사업단계의 실시설계 시행에 따른 (소규모) 환경영향평가시 법정보호종 모니터링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며, 본 기본계획수립시에는 법정보호종 모니터링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</p>	반영	



구분	검토의견	조치결과	비 고
원주 지방 환경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수변부의 다양한 식물군락은 최대한 보전하고, 우점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식생에 대하여는 이들의 분포를 제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본 기본계획 수립시 공사시 공사지역 외 구간은 철저히 보존하고 저수로 준설 등의 하도정비계획은 배제하여 수변부의 하천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였음</li> </ul>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귀화식물, 생태계 교란 식물종 분포의 증가는 수변생태계의 현안 문제점이므로, 제거 및 관리방안을 함께 고려한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반영하여야 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외래식물 및 생태계교란생물(식물)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였음</li> </ul>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습지보호지역 내 기존 제방에 대한 보강을 계획하고 있으나, 동·식물 및 자연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계획 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·제시하여야 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습지보호지역은 제내지축이 현재 공장, 농경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주천강이 합류함에 따라 홍수량 크게 증가하는 구간으로 합류부 일부 구간만 제한적으로 보축계획을 수립</li> </ul>	반영
	<p>2)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하천의 자연스러운 굴곡과 하상의 자연석 및 자갈 등은 최대한 자연상태를 유지하고, 기존의 직벽식(석축, 옹벽 등) 호안공에 대해서는 철거등을 검토하여 하천의 자연성을 최대한 복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축제 및 보축계획 시 미소 서식처가 가능한 다양한 호안공법을 제시하고 1:3.0 이상(일부 구간을 제외) 완경사 제방계획을 수립함</li> <li>기존 콘크리트 구조물 구간 축제 및 보축계획 시 자연성을 복원할 수 있는 호안공법으로 변경제시하였으며 평창읍, 방림리 시내구간은 42번 국도 및 가옥이 밀집되어 보축 시 상당수의 가옥과 공공시설 철거가 불가피하여 부득이 파라펫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함</li> </ul>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호안은 치수적 측면, 생태계보전 및 환경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호안공법을 비교·평가하여 제시하고, 선정 호안공법에 대한 근거 자료를 토대로 설치계획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</li> <li>-호안 종류별 허용 소류력을 각각으로 제시하고, 대상구간 내 발생 가능한 최대 소류력과 비교하여 안정성 및 타당성 여부 검토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성제방별 유속 및 소류력 산정값과 현 호안공법 조사를 토대로 대상구간 내 안전성을 확보 가능한 호안공법을 제시함</li> <li>-호안별 허용 소류력을 제시하였으며, 현황 및 특징을 파악하여 최적공법을 제시하였음</li> </ul>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존의 콘크리트 구조물(석축, 옹벽 등)로 조성된 구간에 대하여는 철거등을 검토하여 하천의 자연성을 최대한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·제시하여야 함</li> <li>-옹벽, 파라펫의 경우 적용 구간별로 설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, 적용 시 구체적인 사유, 근거 자료를 함께 제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존 콘크리트 구조물 구간 축제 및 보축계획 시 자연성을 복원할 수 있는 호안공법으로 변경 제시하였으며 파라펫 설치구간에 대한 설치 타당성 검토 및 사유·근거 등을 제시함</li> </ul>	반영

구분	검토의견	조치결과	비고
원주 지방환경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내지 토지이용현황 등에 따라 제방 및 호안계획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, 고수부지, 폐천부지 등을 홍수터로 확보하는 등의 비구조적 대책을 검토·제시하여야 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내지 토지이용현황과 하도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방계획 대신 홍수관리구역으로 변경하였으며 향후 폐천부지 최종 확정 시 홍수터로 확보 또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음</li> </ul>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해당 하천의 자연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천의 시설물 설치 및 규모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하천 주변 식생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시설물 계획을 수립하였음</li> </ul>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보·낙차공의 경우 개별 시설물에 대한 준치 필요성 등을 검토·제시하되, 여울과 소의 반복을 통해 낙차를 해소하는 방법 등을 병행 검토하여 기능 저하 또는 상실된 구조물에 대하여는 철거하는 방안 검토·제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보·낙차공 능력검토를 실시하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개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하상경사 완화 목적의 낙차공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철거계획은 수립하지 않음</li> </ul>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어도의 경우 해당 하천의 환경특성(유량, 수위, 유속 등), 생태적 현황(서식 어종 등) 등을 고려하여, 하천상·하류간 어류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형 하도식 어도 등 적용 검토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다양한 형식의 어도를 비교·검토하였으며 신설 어도 형식은 여울형 어도를 제시함</li> </ul>	반영
	<p>3) 주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축제 및 호안, 교량, 낙차공 등 각종 구조물은 하천경관 및 주변 식생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으로 계획·시행하되, 시설물은 주변 경관유형별 분석 및 영향예측을 통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형태, 색채 등을 선정하여 경관계획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하천경관 및 주변 식생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시설물계획을 수립하였으며, 주변 경관 유형별 분석 및 영향예측 등을 통하여 하천시설물의 형태, 규모 등에 대해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계획하였음</li> </ul>	반영
<p>4) 수환경의 보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단순히 홍수량 크기에 따라 계획하천 전 구간에 동일한 수준의 홍수방어 대책을 수립하기보다는 향후 하천공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치수안정성, 하천의 자연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방 월류에 의한 침수피해 가능성, 제방 보강을 통해 보호되는 면적과 시설물의 중요도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, 치수적으로 문제가 있는 구간을 중심으로 적정 규모의 개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월류구간의 치수대책 수립 시 제내지 토지이용현황, 경제성, 침수피해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침수면적이 적고 굴입하도인 경우 제방계획을 배제하고 홍수관리구역으로 결정하였으며 제내지가 낮고 광범위한 토지이용으로 침수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은 축제 또는 보축계획으로 제시함</li> </ul>	반영	

구분	검토의견	조치결과	비 고
원주 지방 환경 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과도하거나 일률적인 하폭확장은 지양하고 기존 제방 상태, 하천시설물, 토지이용 현황, 지형·지질 등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홍수소통에 필요한 적정 하폭을 결정하여야 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현 하폭, 하천설계기준상의 하폭공식을 토대로 산정하여 개수 후의 유지관리, 홍수위, 공사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폭을 결정</li> </ul>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금회 과업구간에 대해 기수립 당시의 개수계획 및 하도준설, 친수공간 조성 등과 관련한 시설물 계획을 조사·제시하고 각 내용별로 금회 계획과 비교하여 제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기수립 당시의 개수계획, 공간관리계획 등을 비교검토하여 제시하였으며 대단위 하도준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</li> </ul>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설계기준(홍수량 크기)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하도 전구간의 치수안정성을 확보하는 시설물 위주의 과도한 치수계획 수립 지양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평창강은 '20년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으로 현재 상당 구간의 하천정비가 미흡한 실정이나 기존 저류지 활용, 시설물계획을 배제한 홍수관리 구역결정 등으로 최대한 현 자연상태를 보존</li> </ul>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우수한 산림역(생태자연도 1등급지 등)과 연계된 하천 구간은 수변경관 및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자연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전하는 방안 검토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생태자연도 1등급, 한반도습지 습지보호지역, 야생생물보호구역 등의 구간은 자연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전지구로 결정하였음</li> </ul>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하폭확장 및 하도정비로 인한 건천화·직선화가 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준설 및 하상 평탄화 계획은 배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제방법선 결정 시 현 하도의 선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흐름에 대해 원활한 형상이 되도록 하였으며 하도계획 시 고려사항을 제시함</li> </ul>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개수 전 홍수위에 대한 제방 여유고의 부족고가 크지 않거나 현 하폭과 계획 하폭의 차이가 미미한 경우, 현 하폭을 유지한 상태에서 제방 여유고를 확보하는 방안 검토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여유고 부족이 크지 않거나 연장이 길지 않은 제방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방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음</li> </ul>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제방으로 인해 보호되는 시설의 면적이 작거나 기설제방의 여유고가 미미한 수준일 경우, 월류 가능성을 검토한 후 제방계획 수립 여부를 판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기성제의 능력검토를 실시하여 하폭협소로 월류되는 구간은 축제계획, 여유고 부족구간은 보축계획을 제시함. 지반고가 홍수위보다 낮아 침수피해의 위험성은 있으나 제방축제의 필요성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하였음</li> </ul>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재가설이 계획된 교량 중 연장이 충분한 경우, 여유고와 경간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거나 최근 신설된 교량에 대해서는 가급적 존치하는 방안을 검토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교량의 경간장, 여유고를 검토하여 존치, 철거, 개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최근에 신설된 교량, 단순 경간장 부족 교량에 대해서는 향후 시설관리기관에서 필요시 하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기준을 반영한 개량계획을 수립하도록 보고서에 명시</li> </ul>	반영

구분	검토의견	조치결과	비 고
원주지방환경청	<p>나. 생활환경의 안전성</p> <p>1) 환경기준의 부합성</p> <p>○ 제시된 하천 저질 조사 결과(평가서 398~399쪽), 유기물 및 영양염류 항목에 대해서만 분석을 실시한 바, 하천 저질에 대한 조사는 「하천·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(국립환경과학원 예규 687호, '15.11.16)」을 참고하여 제시된 모든 항목(중금속 포함)에 대한 오염도를 평가하여야 함</p> <p>- 조사지점 평가 결과가 '나쁨' 단계 이상으로 판정될 경우, 오염도 개선을 위한 조치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시행</p> <p>※ 하천 저질 추가 조사를 위한 지점 선정은 주변 오염원 시설 분포를 고려하여야 하며, 오염도 평가를 위한 퇴적물 채취 및 시료조제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하여야 함</p>	<p>○ 「하천·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(국립환경과학원 예규 687호, '15.11.16)」에 제시된 항목 중 미실시한 항목(중금속 항목)에 대하여 추가로 하천 저질 조사를 실시하였으며,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준하여 측정·분석하여 그 결과를 수록하였음. 조사지점은 기존 하천저질 조사지점 중 하천 퇴적물에 대한 오염도 평가를 대표할 수 있는 일부 지점을 선정(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)하여 시행하였으며, 조사지점 평가 결과 하천 퇴적물 항목별 오염평가 금속류 기준 전 지점 전 항목 I등급으로, 하천 퇴적물 지점별 오염평가 기준 '보통' 단계인 것으로 분석되었음('나쁨' 단계 미만)</p>	반영
	<p>○ 소음·진동 예측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지점에 대해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·제시하되, 저감시설 설치 후에도 소음·진동 예측결과가 기준을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 저감방안을 검토·제시하여야 함</p>	<p>○ 공사시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음영향권역 및 영향권역 내 정온시설을 제시하였으며, 향후 시설계시 적절한 저감방안을 제시하겠음</p>	반영
	<p>2) 자원·에너지 순환의 효율성</p> <p>○ 금번 계획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강원도 자원순환기본계획 및 자원순환시행계획을 반영하여 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</p> <p>- 자원순환시행계획 내 폐기물 관련 감량화 목표, 순환이용률 목표, 이를 달성하기 위한 (세부)추진전략을 명시하고 이를 반영한 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</p>	<p>○ 제1차 국가자원순환기본계획 및 강원도 자원순환 시행계획(안)을 제시하였음</p> <p>- 본 단계는 하천기본계획 수립단계로서 정확한 폐기물양 산정이 어려우므로 추후 실시설계 시 강원도 자원순환 시행계획을 참고로 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임</p>	반영
	<p>□ 기타 사항</p> <p>○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,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(본 검토의견 포함) 및 이에 대한 반영여부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, 관련 내용의 반영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, 설명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</p>	<p>○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,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반영여부를 제시하였으며, 반영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, 설명을 함께 제시하였음</p>	반영

구분	검토의견	조치결과	비 고
원주 지방환경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평가서에 제시하는 모든 자료(도면, 조사표 등)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해상도, 규격으로 제시하여야 함</li> <li>- 「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(환경부고시, '17.11.27.)」에 따라 “자연생태환경분야의 환경현황 현지조사표”, “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계약서 제출서류”를 작성·제출하여야 함</li> <li>- 자연생태환경 분야 현지조사표는 수기로 작성한 조사표 사본으로 제출하되, 조사자, 조사 지점, 좌표 등 세부 작성항목 누락 금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평가서에 제시하는 모든 자료(도면, 조사표 등)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해상도, 규격으로 제시하였음</li> <li>- 「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(환경부고시, '17.11.27.)」에 따라 “자연생태환경분야의 환경현황 현지조사표”, “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계약서 제출서류”를 작성·제출하였음</li> <li>- 금회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법개정 이전에 발주된 사업(2012년 발주)으로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, 하천기본계획 최초 계약서와 전략환경영향평가(사전환경성검토)가 반영되어 있는 내역서를 부록에 제시하였음</li> <li>- 자연생태환경 분야 현지조사표는 수기로 작성한 조사표 사본을 제시하였으며, 조사자, 조사 지점, 좌표 등 세부 작성항목을 명기하였음</li> </ul>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평가서 작성 등의 참여 기술인력 현황(하도급 포함)은 실제 참여한 기술인력과 평가항목별 참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.</li> <li>- 평가서 작성 및 검토, 문헌 조사 및 현지조사 참여 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평가서 작성 등의 참여 기술인력 현황(하도급 포함)은 실제 참여한 기술인력과 평가항목별 참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</li> </ul>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6조제5항에 따라 전략환경평가서를 작성한 행정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소속, 직책, 성명을 제시하여야 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6조제5항에 따라 전략환경평가서를 작성한 행정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소속, 직책, 성명을 제시하였음</li> </ul>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해당 계획부지는 영월 한반도 습지보호지역 내 일부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추후 사업 착공 이전에 「습지보전법」 제13조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허가를 득하고 추진해야 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영월 한반도 습지보호지역 내 일부 지역에 계획되어 있는 부지에 대하여 추후 사업 착공 시 그 이전에 ‘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허가’를 득하고 시행하겠음</li> </ul>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총괄</li> <li>○ 본 계획은 평창강 하류권역의 하천기본계획 변경으로 계획지구 및 주변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계획지구 및 주변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였음</li> </ul>	반영
강원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 시행 시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 발생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또는 있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,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을 강구·이행하여야 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추후 사업 시행 시 주변 환경에 대한 악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, 즉각적인 사업 중단 및 원인분석·대책 강구 등을 이행하겠음</li> </ul>	반영

구분	검토의견	조치결과	비 고
강원 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본안 작성 시 아래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, 의견 중 반영이 어려운 항목은 그 사유와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으며, 반영여부 및 조치결과 등을 제시하였음</li> </ul>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세부 검토의견</li> <li>1. 계획의 적정성</li> <li>○본 계획 수립 시 공간계획(국토종합계획, 강원도 종합개발계획, 도시기본계획 등)과의 연계성, 부합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공간계획(국토종합계획, 강원도 종합계획, 평창군기본계획 등)과의 연계성, 부합성을 검토하여 제시하였음</li> </ul>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. 입지의 타당성</li> <li>○자연환경의 보전</li> <li>-사업부지와 환경·생태보전 용도지역(생태·경관보전지역, 상수원보호구역 등) 간의 이격거리를 사전 확인하여 멸종위기종, 주요 철새도래지 등 각종 보호 야생생물의 서식 공간을 훼손하지 아니하여야 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본 계획하천과 환경·생태보전 용도지역들의 이격거리를 제시하였으며, 멸종위기종, 주요 철새도래지 등 각종 보호 야생생물의 서식 공간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함</li> </ul>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자연성이 우수한 지역 등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·지질의 존재여부를 파악하여 과도한 지형 훼손으로 인한 식생 훼손 및 경관 부조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계획하천 내 특이지형 및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을 조사하였으며, 본 하천개수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</li> </ul>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생활환경의 안전성</li> <li>-수환경, 대기질, 소음·진동, 폐기물 등 환경분야 전반의 관련법에 따른 환경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, 주변 정온시설과의 이격거리 확보, 저감시설 설치 등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수환경, 대기질, 소음·진동, 폐기물 등 각 분야의 관련법에 따른 환경기준을 준수하겠으며, 추후 실시설계 및 공사 시행시 주변 정온시설과의 이격거리 확보 및 저감시설 설치 등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겠음</li> </ul>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사회·경제 환경과의 조화성</li> <li>-개발 시 주민 사전협의 등 주변 민원 피해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하며, 사업의 실시가 사회·경제 환경과 적절한 조화를 이뤄 지역사회의 생활환경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추후 사업 시행 시 주민 사전협의 등 주변 민원피해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며, 사업의 실시로 지역사회의 생활환경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</li> </ul>	반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기타사항</li> <li>○본 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, 사업의 인·허가 또는 승인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 서식]을 도 환경과로 통보하여야 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추후 사업시행 시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46조에 따른 “생태계보전협력금”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, 사업의 인·허가 또는 승인 사항을 강원도에 통보하겠음</li> </ul>	반영	

구분	검토의견	조치결과	비 고
평창 군	○ 의견 없음	-	-
영월 군	1. 자연환경의 보전 ○ 생물다양성·서식지 보전을 위한 문헌조사는 「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 보고서, 2010, 환경부」를 참조하였으나 영월 한반도습지보호지역의 경우 일부 법정보호종이 누락되어 「2014 습지보호지역 정밀조사, 2014, 환경부」 자료를 추가 보완할 필요가 있음	○ 법정보호종 문헌조사시 (2014) 습지보호지역 정밀조사(국립환경과학원, 2014) 조사결과자료를 추가 반영하였음	반영
	○ 영월 한반도습지보호지역의 경우 보축계획이 있는바 공사시 남생이 등 법정보호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서식 여부 등을 정밀조사하여야 하며 사업으로 인한 서식방해가 확인 될 경우 전문가 의견을 통하여 적절한 보호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	○ 추후 구체적 사업내용이 확정되는 개발사업단계의 실시설계 시행에 따른 (소규모) 환경영향평가 시 구체적인 법정보호종 모니터링계획을 수립, 시행하며, 본 기본계획수립시에는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을 제시함. 필요시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·시행하겠음	반영
	○ 현지조사 시 발견된 생태교란생물(환삼덩굴, 단풍잎돼지풀 등)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제거·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나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함	○ 생태교란생물에 대한 제거·관리계획을 수립, 제시하였음	반영
	2. 생활환경의 안전성 ○ 대기질 및 소음·진동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사전에 해당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여 저감시설 설치지점 및 규모 등을 결정하고 필요 시 추가 저감방안을 강구 하여야 함	○ 본 하천기본계획 단계에서 소음영향권 등 이격거리와 정온요구시설을 제시하였음. 향후 실시설계 및 (소규모)환경영향평가 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저감시설 설치지점 및 규모 등을 결정하고 필요시 추가 저감방안을 강구하겠음	반영
	○ 공사 시 토사유실로 인하여 하천에 토사가 유입되지 않도록 우기 시 공사를 자제하고 공사부지 토사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임시침전지, 오탁방지막 등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최소화하여야 함	○ 추후 공사 시 토사유실로 인하여 하천에 토사가 유입되지 않도록 우기에 공사를 자제하고 공사부지 토사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임시침전지, 오탁방지막 등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음	반영
3. 사회·경제환경과의 조화성 ○ 축제계획에 따라 자연석 쌓기 등 공사시 석면이 함유된 석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납품과정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	○ 추후 사업 시행 시 축제로 인한 자연석 쌓기 등에 사용될 석재에 석면이 함유된 석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납품과정에 철저한 관리를 할 것임	반영	

구분	검토의견	조치결과	비 고
충청 북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본 계획은 「하천법」 제25조에 의한 하천기본계획으로 상위계획과 부합하게 추진하여야 하며,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[별표2]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원주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본 하천기본계획과 연관 있는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 부합되게 계획하였으며,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토록 하겠음</li> </ul>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 시행으로 인한 동식물상의 서식, 먹이원 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환경부의 “대체서식지 조성·관리 환경영향평가 지침”(13년11월)을 참고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서식지를 조성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추후 개발사업단계의 실시설계 시행에 따른 (소규모) 환경영향평가 시 대체서식지 조성·관리방안을 검토·시행하겠음</li> </ul>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야생동물의 주요 번식기 및 산란시기(3~6월 및 9~10월)와 겨울철새 도래기 등을 최대한 피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사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, 향후 법정보호종의 주요서식지가 발견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추가적인 보전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야생동물의 주요 번식기 및 산란기(3~6월 및 9~10월)와 겨울철새 도래기 등을 최대한 피하여 공사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며, 향후 법정보호종의 주요서식지가 발견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추가적인 보전대책을 수립·시행하겠음</li> </ul>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본 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추진 시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, 본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후 사업계획 등 인·허가 시 개발(훼손) 면적에 해당하는 협력금을 확보 사업계획에 반영 추진하여야 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추후 사업시행 시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46조에 따른 “생태계보전협력금”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하면, 사업계획 등 인·허가 시 해당하는 협력금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음</li> </ul>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사 시 비산먼지, 소음·진동, 토사유출로 주민피해 및 하천수질 및 수생태계에 악영향이 우려되므로 해당 유역의 강우 및 지형적인 특성(홍수량, 홍수위, 비점오염원 등)을 고려하여 하천수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 후 하천과 유역특성에 맞는 친환경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하고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·추진함이 바람직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해당 유역의 강우 및 지형적인 특성(홍수량, 홍수위, 비점오염원 등)을 고려하여 하천수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천과 유역특성에 맞는 친환경적인 저감방안 및 계획을 수립하여, 추후 공사 시 비산먼지, 소음·진동,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·하천수질·수생태계에 악영향이 없도록 하였음</li> </ul>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 시행 시 환경 관련 제반규정(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, 특정공사 사전신고 등)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하며,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추후 사업 시행 시 환경 관련 제반 규정을 사전에 이행토록 할 것이며, 발생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처리토록 할 것임</li> </ul>	반영



구분	검토의견	조치결과	비 고
충청 북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바, 공사 시 녹색제품을 적극 구매하여야 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추후 사업 시행 시 「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녹색제품을 적극 구매토록 하겠음</li> </ul>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본 사업의 공사 및 운영 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 발생 및 부적정 예측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저감방안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·시행하여 민원발생 및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추후 사업의 공사 및 운영 시 본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 발생 및 부적정 예측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저감방안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·시행하여 민원발생 및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음</li> </ul>	반영
제천 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평창강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공사 구간 내에 제천시 상수도 원수 공급처인 장곡취수장이 위치하고 있기에, 원활한 원수 공급을 위하여 장곡취수장 인근에 2중 오탁방지막을 설치·운영하여 부유물질 확산을 최소화하여야 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추후 사업 시행 시 장곡취수장 인근에 2중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 부유물질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음</li> </ul>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또한 설치된 오탁방지막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주기적 점검으로 공극폐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추후 사업 시행 시 설치할 오탁방지막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인 점검 등으로 공극폐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</li> </ul>	반영